



소통 변화 활력,
주민과 함께

2024. 1. 25.(목)
북천면사무소

이장협의회 회의자료



북천면

목 차

[총무부서]

- 하동군 핫플레이스 지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1
- 하동군 지리산 생태과학관 설연휴 휴관일정 안내 1
-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제2차 전국동시 신청안내 2
- 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2
- 2024년 찾아가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 희망마을 신청안내 .. 2
- 하동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홍보 및 이용협조 3
- 2024년 북천면 설명절 쓰레기수거 운영 일정 안내 4

[주민생활지원부서]

- 2024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5
- 2024년 디딤씨앗통장(CDA) 사업홍보 6
- 2024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수요조사 7

[산업경제부서]

- 2024년도 공익직불제 관련 이장 교육자료 배부 8
- 2024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9
- 2024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9
- 2023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공급 안내 10
- 농지 취득시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배부 10

[민원부서]

-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11

I 하동군 핫플레이스 지정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안내

이영화
(880-6335)

- 목 적 : 우수한 핫플레이스* 발굴·홍보를 통한 문화관광 하동 이미지 제고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핫플레이스 : 뜨거운 곳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기 있는 곳)
- 모집대상 : 하동군 관내 핫한 관광지, 각종 숙박·체험시설 및 카페, 식당, 다원·다실 등
- 지원내용 : 지정된 핫플레이스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핫플레이스 집중 홍보 등
- 모집기간 : 2024. 1. 22.(월) ~ 2024. 2. 20.(화)
- 신청방법 : 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별 특색있는 장소(사업장) 발굴 및 신청

II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설연휴 휴관일정 안내

이영화
(880-6335)

- 대상시설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악양면 섬진강대로 3358-30)
- 운영시간 : 매일 09:00 ~ 18:00
- 휴관일정

일 자	2. 9.(금)	2. 10.(토)	2. 11.(일)	2. 12.(월)	2. 13.(화)
운영여부	정상운영	휴관	정상운영	정상운영	휴관

※ 2024. 2. 13.(화) : 정기 휴관일(2.12.) 정상운영에 따른 대체 휴관

- 문 의 처 :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055-884-3026)

Ⅲ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제2차 전국동시 신청 안내

이영화
(880-6335)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및 범죄피해가구 내
5~18세 유·청소년 (출생일 기준, 2006. 1. 1. ~ 2019. 12. 31.)
- 지원내용 : 월 1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최대 12개월)
※ 사업예산 범위내 접수로 접수인원 초과시 미선정될 수 있으며, 접수인원 미달 혹은 선정 후 미이용자 발생시 2024년 수시 추가모집 예정
- 접수기간 : 2024. 1. 22.(월) ~ 2. 1.(목)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 또는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신청

Ⅳ 2024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이영화
(880-6335)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69세
- 지원내용 : 월 11만원 범위 내 수강료 지원(최대 12개월)
- 접수기간 : 2024년 예산범위 내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방문 신청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별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신청방법 안내 및 홍보

Ⅴ 「2024년 찾아가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 희망마을 신청 안내

이영화
(880-6335)

- 기 간 : 2024. 2 ~ 11월 중
- 운영장소 : 15명 이상 사용 가능 장소(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등)
- 대 상 자 : 경증치매* 어르신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
(*경증치매 :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 어르신)
- 운영시간 : 주 2회/3시간 기준, 총 8회기(4주) 운영
- 모 집 수 : 5개소(하동군)
- 선정기준 : 경증치매 어르신이 다수이며 참여도가 높은 마을
- 교육내용

- 기본프로그램 : 사전·사후평가(MMSE-DS, SMCQ, SGDS-K),
 - 인지재활프로그램 : 뇌똑똑 인지훈련, 두근두근 뇌운동 등
 - 인지자극프로그램 : 체조활동,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 신청방법 : 2024. 1. 31.(수)까지 총무부서 이영화 제출

【붙임1】 2024년 찾아가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 신청서 서식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 희망마을 신청서 제출

VI 하동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홍보 및 이용협조

신성용
(880-6333)

- 목적 :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 하동 알리미 및 하동사랑방 개요

구분	목적	게시글 및 알림정보	비고
하동 알리미	원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발송하는 맞춤형 자동알림 서비스(문자)	- 홈페이지 새소식 - 보도자료 - 행사교육 - 그 외 주요한 정보	하동알리미 가입 QR코드 
하동 사랑방	자유로운 의견게시 및 다양한 정보 공유	- 각과에서 추진중인 정책 - 군민들에게 홍보 - 축제, 행사 일정 및 안내 - 군 일자리 정보 - 교육 신청 안내 - 상수도 단수 예고와 같은 생활에 필요한정보	하동 사랑방 위치 하동군 홈페이지 우측 배너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알리미 가입 독려 및 하동사랑방 홍보

○ 운영개요

일 자	2. 9.(금)	2. 10.(토)	2. 11.(일)	2. 12.(월)
운영여부	0	X	X	0
배출항목	종량제쓰레기 (일반/음식물)	배출금지	배출금지	종량제쓰레기 (일반/음식물)
배출시간	저녁 8시 ~ 다음날 새벽 6시			

○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연휴 전 면사무소 방문하여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배출
- 종량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녹색)/일반쓰레기(노란색) 봉투 구분하여 배출
-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시 절대 수거 불가

○ 협조사항

- 재활용품은 화요일만 배출 가능하므로 연휴 전 또는 후에 배출
-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절대 수거 불가하므로 쓰레기봉투 사용 안내 철저히
- 생활폐기물 배출사항 관련 마을별 방송 실시

〈마을방송(안)〉

설명절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설명절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금요일, 월요일이며,
 재활용품은 화요일만 배출 가능하므로, 연휴 전 또는 후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배출 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봉투를 구분하시어 배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쓰레기는 수거가 불가하오니
 마을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별 생활폐기물 배출사항 관련 마을방송 실시

I 2024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

오성택
(880-6357)

○ 교부금액 :

- 2024년 상반기 경로당 운영비 : 15,180,000원(20개소)

구분	합계		차등지급(등록회원수)							
			A등급(50명이상) (월150,000원×6월)		B등급(20~49명) (월120,000원×6월)		C등급(10~19명) (월110,000원×6월)		미등록경로당외 (월110,000원×6월)	
	개소	금액	개소	금액(원)	개소	금액(원)	개소	금액(원)	개소	금액(원)
북천	20	15,180,000	5	4,500,000	13	9,360,000	1	660,000	1	660,000

- 2024년 상반기 경로당 난방비 : 22,680,000원(20개소)

구분	상반기(1월~3월) 난방비 지급								
	합계		차등지급						
			A등급(1,200천원)		B등급(1,140천원)		C등급(1,020천원)		
개소	금액	개소	금액(원)	개소	금액(원)	개소	금액(원)		
북천	20	22,680,000	8	9,600,000	7	7,980,000	5	5,100,000	

○ 교부방법 : 경로당별 계좌입금

○ 지급일 : 2024.2.2.(금)까지 지급예정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 신청기간 : 2024. 1월~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만18세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아동
- 지원기간 : 가입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 매칭 및 적립
 - 1 : 2 매칭(아동 적립 월5만원 : 매칭지원금 월10만원)
 - 아동 월 최대 50만원까지 적립 가능. 단, 매칭지원금 월 최대 10만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원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북천면사무소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유의사항 : 수시 인출 불가
 - 조기인출은 아동적립금만 지급 가능하고 만1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가능
(단,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 의료비 지원 비용에 한함)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별 지원대상자가 사업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총사업비 : 20,000천원(1가구당 최대 2,000천원)
- 자격요건 : 「하동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주민
 - ※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 사업대상(우선순위)
 - 1) 집안에 쓰레기를 저장해 개인위생 및 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구
 - 2) 악취 및 높은 화재위험으로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유발하는 가구
- 사업내용
 - 폐기물 수거 및 청소·정리
 - 저장강박진단 및 필요시 정신건강 상담 치료 연계
 - 사후관리, 사례관리 연계 등
- 유의사항(사업배제)
 - 고의(게으름 등)로 쓰레기를 방치하는 가구
 - 유사사업(서비스) 기 수혜 가구(단, 반복적 민원 가구는 예외)
- 신청기간 : 2024. 2. 8.(목)까지
- 제출서류 : ①수요조사서 ②대상자 추천서 ③동의서(면사무소 비치)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저장강박 의심가구 적극 발굴 후 신청 협조

- 목 적 : 기본직불사업 시행 전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내용 안내부 정수급 방지 중요성 등 농업 현장의 이해도 향상
- 2024년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구 분	비대면(미방문)	방 문	
신청기간	2024. 2. 1. ~ 2. 29. (1개월간)	2024. 3. 4. ~ 4. 30. (2개월간)	
장 소	온라인 (농식품부에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방 문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사무소)	
대 상	20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방 법	인터넷, 모바일, ARS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간편 신청대상 안내 예정)	기존수혜자	신규신청자
		배포한 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없음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농지대장(임차 대상자), 경작사실확인서(신규, 관외) 등	
비 고	기간 내 미신청 시 방문 신청 가능	-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20만원 ⇒ 130만원)

나. ‘23년 8월 16일 이후 농지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는 직불금 미지급(‘23년 8월 16일 농지법 제23조 개정)

다. 타기관 직불금(수산, 임업)신청을 위해 기 받았던 기본형공익직불금의 반납 및 유형변경 미허용

II 2024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남은진
(880-6344)

- 지원대상 : 하동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실 유기동물 입양자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자에 한함)
- 지원내용 : 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질병진단비, 치료비 등)
- 지원한도
 - ㄱ. 지출액 250천원 이상 : 150천원 지원
 - ㄴ. 지출액 250천원 미만 : 총 금액의 60% 지원
- 사업기간 : 2024. 12. 20.까지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 신청방법 :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방문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마을주민들에게 홍보

III 2024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남은진
(880-6344)

- 지원대상: 하동군 관내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등
- 사업내용: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외 6
- 신청방법: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방문신청
- 신청기한: 별첨 참조(사업마다 상이)

[별첨] 2024년 산림분야 지원사업 안내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보조사업 희망 임업인에게 홍보

IV

2023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공급 안내

남은진
(880-6344)

- 공급기간 : 2024. 3. 29.(금)이내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공 급 량 : 900kg
- 가 격 : 20kg 34,400원
- 공급장소 : 하동 옥종농협 북천지점
- 기타사항
 - 전국 공급량 제한 및 감자진흥원 측 물량 확대계획 미정
 - 개인적 구매 어려움(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 문제)
 - ▶ 기존 신청량보다 공급량 부족한 관계로 마을별 확정물량 토대로 신청자들에게 배부

[붙임 2] 2023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공급량(북천면)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신청농가에 안내

V

농지 취득시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 배부

남은진
(880-6344)

- 목 적 : 농지취득 시 민원이 알아야 할 농지제도 안내를 통한 원활한 농지취득 진행
- 내 용 : 농지취득시 농업경영 의무 등 준수사항 안내

[붙임 3] 농지 취득시 준수사항 안내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

I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정순임
(880-6353)

- 부과현황 : 269건 / 4,219,750원(북천면)
- 납세의무자 : 2024. 1. 1. 현재 과세대상 허가·인가·면허등 보유자
- 납부기한 : 2024. 1. 31.(수) 까지
- 행정사항 : 납부홍보 철저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독려 협조

2024년 찾아가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신청서

읍·면	마을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예정인원	비고
북천면					

위와 같이 2024년 하동군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합니다.

2024년 1월 일

○○ 마을 이장
_____ (서명 또는 인)

하동군보건소장(치매안심센터장) 귀하

2023년산 보급종 씨감자 춘기분 공급량 (북천면)

연번	마을	신청량(박스)	공급량(박스)	비고
1	방화	6	3	
2	가평	4	2	
3	사평	8	4	
4	모성	2	1	
5	직전	9	5	
6	신촌	1		
7	이명	4	2	
8	빙옥	6	3	
9	남포	3	4	
10	금촌	5		
11	중촌	12	6	
12	기봉	4	2	
13	화정	11	5	
14	상촌	18	8	
계		93	45	

[붙임 3] 농지 취득시 준수사항 안내

농지처분명령



농지처분 의무 미이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농지법 제11조)

- ①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농지법 제57조)

원상회복명령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농지법 제42조)

• 무단 휴경 인정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가능

※ '25년 1월 3일부터 경유지 및 소유자·경유자 또는 관리자내국도 원상회복 명령 부과 가능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지법 제63조)

-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국시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을 금액의 25%를 부과
-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

벌칙



불법취득, 불법전용, 용도구역 행위제한 등 위반시 벌칙 적용 (농지법 제57부터 제61조까지)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② 전용지역 내 농지불법전용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 ③ 전용지역 밖 농지불법전용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50% 이하 벌금
- ④ 전용지역 내 허용용역 위반, 단용도일시 사용 허가없이 불법전용, 전용된 도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⑤ 농지전용신고 또는 단용도일시사용신고 없이 불법전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⑥ 농지명대차 위반 등
 - 2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취득시 농업경영의무 등 준수사항 안내



- 농지는 식량공급,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며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하기 위해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농지법 제3조)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지법 제63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경영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농지취득 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
- ②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 ③ 농지불법전용 시 원상회복명령 및 농지처분 의무 부과
-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시 농지처분명령
- ⑤ 행정처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⑥ 농지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농지취득과 준수사항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취득 가능 (농지법 제63제1항)

※ 다만서 취득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 농업인이거나 농업종사원이 자기의 재산과 부담으로 농업용 명목(농지법 제23조 제4항)

공공기관 등 실험·실습 목적, 주말체험농 목적, 농지전용 목적 등 예외 경우에도 농지 취득 가능 (농지법 제63제2항)

※ 실험·실습, 주말체험농, 농지전용 등 취득 목적에 따라 적용하게 됨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 경우 해당시 허용 (농지법 제23조 제1항)

- ① 징집, 징병, 학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상속농지, 농지관공허가, 영농여건불리농지, 8년 자급 후 이농한 농지 등
- ③ 60세 이상인 사람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
- ④ 3년 이상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 위탁임대 등

※ 임대차 위반시 2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처분 의무 부과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법 제10조 제1항)

- ①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휴경한 경우
- ② 농업회사법인이 농지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 업무상농지 1/30이상 휴경한
- ③ 공공기관 등이 실험·실습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④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2년 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상속농지 등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 등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 명령 유예 가능(3년) (농지법 제12조)

- ①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 ②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농지의 매·위탁 계약 체결

※ 농지 처분명령을 받지 않고 그 유예기간에 지난 경우 처분 의무는 없애짐